

2024년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 비공개 세부기준

◆ 관련근거 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9조 제3항

-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·공개
 - *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 및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, 비공개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없음

순 번	담당부서	세부업무	비공개 해당 내용	관련근거	비 고
1	운영지원팀	보안업무에 관한 사항	보안업무규정 제5조에 따라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-보안업무세부추진계획, 비밀문서, 대외비, 비밀취급 인가자명단, 암호자재 등 보안업무관련 정보일체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	
2	운영지원팀	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	해킹, 사이버테러,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들어나 국가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 -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통신 관련 정보 일체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	
3	공통부서	재판, 소송 등에 관한 사항	진행 중인 재판,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-소장, 청구서, 답변서,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, 증거자료, 준비서문, 사실조회 결과 등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	
4	운영지원팀	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	시험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-시험 출제관리, 시험위원 위촉, 시험에 관한 내부계획,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	
5	운영지원팀	소속 공무원의 근무평가 및 상훈에 관한 업무	공정한 근무평가 및 상훈 결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-공무원의 근무평정자료 -공무원의 상훈 결정을 위한 상훈심사위원회 명단 등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	

6	항공조사팀 철도조사팀	항공·철도사고조사에 관한 사항	공정한 사고조사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-조사참여자 현황, 내부검토 자료, 조사 중 필요한 자문 내용, 외교적으로 협의가 완료되지 않는 사항 등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	
7	공통부서	위원회 운영 및 관리 (항공철도 사고조사, 자문, 심의, 채용, 각종 평가 등)	공정한 업무 수행(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 초래 등) 및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-심의자료, 회의록 등 -자문, 심의, 각종 평가위원 등의 개인식별정보(주민등록 번호, 계좌번호, 집 주소, 연락처 등)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	
8	공통부서	감사업무	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및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-비위 사실을 포함하는 문답서, 확인서 등 감사 및 조사 활동 중 생산된 문서 -처분요구서(성명, 업체명 등 개인정보 포함), 부패신고방 신고 및 처리 서류 등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	
9	공통부서	감독 및 지도점검	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및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-현장 불시 감독·지도점검 계획 -지도감독결과 중 대표자 등 관계자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	
10	운영지원팀	채용, 임용, 복무, 출입증 관리, 민원 등에 관한 업무 중 개인정보취급에 관한 사항	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-채용후보자의 명부, 집 주소, 전화번호, 학력, 주민등록번호, 사회경력 등 -공무원의 집 주소, 전화번호, 학력, 주민등록번호, 사회경력 등 (다만,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) -진정, 탄원,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인 경우 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	

			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 (다만,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)		
11	공통부서	용역, 공사 등의 업무 수행	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-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(개인, 법인, 단체 등)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·신공법·시공실적·내부관리(기술자 경력), 법인 등의 기술평가 결과, 계약 등을 위하여 제안한 내용 등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	